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4. 5. 30 선고 2023나1201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4. 5. 30 선고 2023나12017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9. 14 선고 2022가합5064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

담당변호사 백창협

변론 종결2024. 4. 11.

판결 선고2024. 5. 30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9. 14. 선고 2022가합50644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66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원고와 피고사이에 2022. 5. 4. 체결된 신축예정상가 40평의 무상양도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별지 포함).

○ 제1심판결 3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5) 원고는 2022. 4. 26.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소장 부분은 2022. 5. 19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』

○ 제1심판결 3쪽 13행의 "원고는 2022. 5. 4."을 "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그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. 5. 4.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4쪽 1행의 "대안이 었었던 점"을 "대안이 있었던 점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4행의 "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"를 "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각주1 4행의 "제출한 바가 없다."를 "제출하지 아니한 채 8~1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.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6쪽 2행의 "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"를 "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거나 원고가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6쪽 17행의 "주장하고 있는바"를 "주장하고 있고, 그 위치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장자리에 접하고 있는바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8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바) 설령,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초반부터 매각의사를 분명히 하고 호의적, 협조적,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로부터 사업부지의 매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평당 2,000만 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추구가 허용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과정이라고 할 것이고, 이와 같은 거래과정을 거쳐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 매매대금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원철

판사김경선

판사기희광